



[솔레아스]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솔레아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141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6.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10.

주식회사 솔레아스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대표번호 Tel. 1668-4195 | 가맹사업부 Tel : 032-323-9195

E-mail : andres@soleas.co.kr | Homepage : www.soleas.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 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솔레아스	솔레아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6.19.	2020.06.19.	이종우	031-689-4168	-
	법인등록번호	110111-7527546	사업자등록번호	249-86-02102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종우 / (주)솔레아스	솔레아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우	1668-4195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최용호 / (주)솔레아스	솔레아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우	1668-4195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최정은 / (주)솔레아스	솔레아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우	1668-419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솔레아스	
상 호	솔레아스 OO점	보통 상호와 지역명칭을 함께 설정하여 지정함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일자) 4020210025823(2021.02.05) 등록번호(일자) 4018894530000(2022.07.14)
		출원번호(일자) 4020210025815(2021.02.05) 등록번호(일자) 4018894540000(2022.07.14)
	SOLEAS PARK	출원번호(일자) 4020210216816(2021.10.26)
그 밖의 영업표지	SOLEAS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58,233	93,411	164,822	620,409	167,759	152,363
2022년	1,083,634	770,784	312,849	974,220	143,035	148,027
2023년	1,954,583	1,396,169	558,413	3,036,293	224,933	245,56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종우	대표이사	2020.06 ~ 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최용호	사내이사	2022.12 ~ 현재	부사장	조직관리
	최정은	감사	2020.06 ~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1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이사 (이종우)	에스에프씨 교육지원센터	가맹사업 경영	2019.03. ~ 2023.04	솔미축구센터(등록번호: 20190994) 라는 영업표지의 스포츠사업 경영

솔미축구센터 정보공개서는 2023년 4월 등록취소 요청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솔레아스	[솔레아스] 매장 인테리어 및 홍보	2021.02.05. 출원	출원번호 4020210025823	(주)솔레아스	2032.07.14.
		2022.07.14. 등록	등록번호 4018894530000		
솔레아스		2021.02.05. 출원	출원번호 4020210025815		2032.07.14.
		2022.07.14. 등록	등록번호 4018894540000		
솔레아스 테니스		2021.10.26. 출원	출원번호 4020210216816		-

SOLEAS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솔레아스] 가맹사업 현황

1. 『솔레아스』를 시작한 날: 2021년 10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년 5월 3일)

2. 『솔레아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솔레아스	솔레아스	한진석, 이종우	가맹사업 준비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301호(성수동2가)
		이종우	2021.12~2022.0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4, A동 14층 5호(문정동, 엠스테이트)
	솔레아스	이종우	2022.06~현재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12, B1 101-113호(에이스하이테크비전)

3. 『솔레아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솔레아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 관련	풋볼, 테니스 등 스포츠 종목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솔레아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2	-	6	5	1	13	11	2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1		1
광주	-	-	-	-	-	-	1	1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2	2	-	6	5	1	9	8	1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	-	-	-	-	-	1	1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1	1	
제주	-	-	-	-	-	-			

5. 바로 전 3년간 『솔레아스』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2	-	-	-	2
2022	2	3	-	-	-	5
2023	5	6	-	-	-	11

6. 『솔레아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솔레아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대표이사 (이종우)	에스에프씨 교육지원센터	솔외축구센터	20190994	스포츠 관련	3/1	3/1	

솔외축구센터 정보공개서는 2023년 4월 등록취소 요청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솔레아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1	449,167	-	882,640	-	171,350	-	6곳 산출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1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8	460,381	-	882,640	-	171,350	-	5곳 산출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1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1	-	-	-	-	-	-	-
제주		-	-	-	-	-	-	-

※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들의 면적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표의 평균매출액은 실제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매장 6곳의 매출액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솔레아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솔레아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1	59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솔레아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④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0,415	 (비공		
광고	소계		30,415	 (비공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KEB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본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1588-1111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KEB하나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가맹금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KEB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프랜차이즈 가맹금 에스크로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솔레아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를 사용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솔레아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부가세포함)	내용	비고
가맹비	40,000	지적재산권/브랜드사용권 및 가맹점 운영권	
개점 전 교육비	4,500	경영자/코치 교육	
개점 홍보비	4,500	개점 후 홍보비	
합계	49,000		

※ 지급기한

- 가맹계약 체결 시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맹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 교육비: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개점 홍보비: 영업개시 행사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2) 보증금액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가맹금 및 로열티 미지급 등	

※ 지급기한

- 가맹계약 체결 시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매장 유형	금액
가맹비	40,000
개점 전 교육비	4,500
개점 홍보비	4,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합계	54,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330㎡(10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	120,250	1,203	-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지정 협력업체	77,000	770	인테리어 공사 개시 3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구장시공		7,150	71.5	주문제작 3일 이전	제작 전 계약취소	
집기류		22,000	220	물품공급 5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유니폼 등)		1,100	11	물품공급 5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 외 추가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내용 및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전기증설 및 배전함/ 가스배관공사/ 냉난방기/ 소방시설공사 등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상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 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슬레아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키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교육	<u>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u> 참조	가맹본부	협의 후 결정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비	<u>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u> <u>8. 광고 및 판촉활동</u> 참조	가맹본부	협의 후 결정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	협력업체	Ⅶ. 가맹본부의 경	환경개선 공	환경개선 공사 이후

개선비용	머지 비용	(미지정) 또는 가맹본부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반환되지 않음
자연이자	연 10%	가맹본부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물품 대 금, 계약서상의 의 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세부내역 참고	가맹본부	매 익월 5일	-	소멸성 비용으로 반 환되지 않음

※ 로열티 세부내역

로열티(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월 매출액의 5.5%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면제 (6개월 이후부터 청구)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가맹본부
위생 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회계처리	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		
운영 관리	본사 레슨별 프로그램 및 운영 가이드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	---------------------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점포의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가맹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솔레아스]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솔레아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0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을"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갑"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을"이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갑"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⑥ "갑"이 『솔레아스』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을"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솔레아스]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규격	단위	공급가격 (단위: 원)		구분(공급업체)
				상한	하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솔레아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솔레아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3] 참조	가맹점사업자 임의로 용역(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추가/변경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회위반: 서면시정요구 - 2회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참조		변동 사항이 있을시 서면 공문, 유무선, 이메일 및 포스를 통해 공지	2024년 3월 기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축구교실, 실내테니스 아카데미, 풋살 등 스포츠 관련 서비스	솔레아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동 단위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다른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솔레아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3	46	5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서비스)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솔레아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십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하셨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하셨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셨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하셨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가맹계약서 제32조 제2항)

1. "을"이 본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솔레아스>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을"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갑"의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판매기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29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액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채무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변제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을"이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23조 제1항)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상품 및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 또는 제품을 가맹 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을"이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9. "을"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10. "을"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을"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2. "을"이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 서비스 또는 제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을"이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14. "을"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을"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16. "을"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3일 이상 점포운업을 방치하는 경우
17. "을"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을"이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9.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을"이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
21.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 "을"이 제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29조 제2항)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 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시정이 불가능한 성

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을”이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또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업무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교육비 3,300천원/부가세포함)
업무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솔레아스]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솔레아스]와 동일한 서비스 ·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솔레아스]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7일 전 당사의 승인 필요)	문의: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후 11시 또는 12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및 아르바이트	건강검진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상태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방문	가맹본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상태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상태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경영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점검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 위 내용은 당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솔레아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광고비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광고실시 최소 1개월 전	대중매체 광고 및 인터넷,

			수에 따른 분담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60%	광고비 40% 중 가맹점 수에 따른 분담	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모바일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홍보 (전국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	
판촉행사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 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지역단위 및 개별 광고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전체 가맹점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27조(광고 및 판촉) 관련조문

- ① “갑”은 “을”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② 광고 및 판촉의 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갑”이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역단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을”이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비용을 부담한다.
- ④ 가맹점모집광고일 경우에는 “갑”이 전액부담하며, 전국 단위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와 주요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갑”은 **50%**, 가맹점사업자들은 **50%씩**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 모집광고와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갑”이 **60%**, 전체가맹점사업자 **40%**를 부담한다.
- ⑤ “갑”은 전항의 광고에 대한 세부내역을 광고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책정하여,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계획·주관하고 “갑”이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한다)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사전에 “갑”에게 서면 신청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을”은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솔레아스』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서비스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금 감면조건이라도 최초가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 ④ “을”이 제2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이백만원(W2,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30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일십만원(W1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및 제16조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W20,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이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W5,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W5,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동조의 위약벌 규정은 “갑” 또는 “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

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6㎡(20평)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5~5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지급	D-55~53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공사일정확인	D-52~5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등)	D-45~5(30일)	
주방설비 입고	- 주방설비 및 집기류 입고 셋팅 - 초도 인쇄물 입고 등	D-10~4(6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협의(10일)	
가오픈 리허설	- 오픈전 최종점검 및 리허설	D-3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6조)

-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른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나 중재판정에 따른다. 조정의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나 “을”의 가맹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본사 제작 관련매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전산시스템 제공	관리시스템	사전교육	계약기간 내 상시	관리시스템	ERP
슈퍼바이저 배치	경영지도	오프라인 방문	계약기간 내 상시	경영지도	
플로우 화상교육	본부와의 회의	온라인 교육	계약기간 내 상시	경영지도	
마케팅 콘텐츠	디자인/카피라잇	온라인 교육	계약기간 내 상시	B2C 마케팅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솔레아스]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집단강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매뉴얼 (동영상) 제공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협의 후 변경 가능)	필수교육
수시교육	서비스 품질 강화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품질 강화 기타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 위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솔레아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주관	비용	내용	비고
개점 전 교육비	본사	3,300	강사 및 점주 교육 (*점장 채용시 훈련비용)	
	임원	1,100		
필수교육	가맹본부	1,100	- 교육일시: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수립 - 교육기간: 2박 3일 - 참가인원: 가맹점 당 4인 까지 참석 가능	참가인원 2인 기준 (숙식제공)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점주를 대신할 점장이 있는 경우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맹점사업자의 불참이 허용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교육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솔레아스플라자 의정부곡점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 1로, B1 (101-111호)
2	인천	솔레아스파크 청라국제도시점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2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3개월	경기: 2022-05-03 오픈 인천: 2023-02-01 오픈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036,293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기재

별첨. 설비/장비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상품/용역 권장가격

PROGRAMS (프로그램)

솔레아스풋볼은 아이의 연령별 카테고리, 운동 능력 및 마음자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JUEGO (놀이축구)

[5세 전용] 50분 볼 레크레이션/ 풋볼 어드벤처

축구를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능적인 훈련보다는 팀 스포츠로서의 축구가 지닌 가치를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 대 상 : Prebenjamin (5세)
- 정 원 : 최대 6명 (5세 전용 구장)
- 수 강 료 : 주 1회(월-금) 13만원 / 주 1회(토) 14만원 / 주 2회 (월-금) 24만원 *셔틀버스 이용료 미포함

● INICIAR (입문반)

[유아] 50분 Calentamiento (준비운동) - Ejercicio Principal (본 훈련) - Mini Partido (미니게임)**[초등] 60분 Calentamiento (준비운동) - Ejercicio Principal 1, 2 (본 훈련 1, 2) - Mini Partido (미니게임)**

축구의 물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해당되며 솔레아스풋볼의 연간 정규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부의 경우, 매 월 리가 데 로칼을 통해 경쟁과 화합의 기회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Benjamin (6,7세) / Alevin (초등부 전체)
- 정 원 : 최대 12명
- 수 강 료 : 주 2회(월,수/ 화,목) 18만원 / 평일 주 1회 11만원 / 주말 주 1회 12만원 *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 (토요일 제외)

● PROGRESO (심화반)

[저학년/고학년 80분] 코오버코칭 Lv1 / 코디네이션 / 팀 전술훈련

축구를 배운 적이 있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제법 진지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및 운동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인 능력 향상이 주 목적이며, Technica (기본기 트레이닝)와 병행하여 수강하길 권장합니다. 또한 각종 외부 대회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Alevin A (초등 1학년) 이상 · 구 분 : 저학년 심화 · 수 강 료 : 주 2회 22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Alevin B(초등 4학년) 이상 · 구 분 : 고학년 심화 · 수 강 료 : 주 2회 22만원 |
|---|--|

PROGRAMS (프로그램)

● SUPERIOR (대표팀)

공동 훈련 100분 + 친선경기 및 주말리그 참가

솔레아스풋볼의 각 지점 별 대표팀으로서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2종 선수 양성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입단 테스트 및 승급 절차가 있으며, 슈퍼리어 팀 입단 시 대한축구협회 2종 선수로 등록되어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i-League를 비롯한 공식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 대 상 : Alevin A/B/C (초등 1-6학년)
- 구 분 : Superior A (5,6학년) / Superior B (3,4학년) / Superior C (1,2학년) /
- 수 강 료 : 주 2회 (월,수/화,목)+(주말) 26만원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 *주말 : 대회 참가 및 연습 경기
- 비 고 : 풀 코트 혹은 구장 대관 / 슈퍼리어 전용 홈&아웨이 유니폼 구입 필수

● INGLES PACKAGE (영어축구 패키지, 주 2회 프로그램)

[6-7세/50분] [초등/60분]

모든 훈련 세션은 주 2회를 기준으로 제작되는 데 이 중 하루는 담당코치님과 원어민 디렉터가 함께 영어로 수업하며, 어학 능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INICIAR (입문반) 전용 패키지입니다.

- 대 상 : Benjamin (6,7세) / Alevin (초등부 전체)
- 정 원 : 최대 12명
- 구 성 : 1회 영어축구 (INGLES FUTBOL) : 원어민 디렉터 + 담당코치 / 1회 입문반 (INICAR) : 담당코치
- 수 강 료 : 주 2회 24만원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

● INGLES FUTBOL (영어축구/주 1회)

[6-7세/50분] [초등/60분]

원어민 디렉터와 함께 하는 주 1회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코치님과 원어민디렉터가 함께 투입되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대 상 : Benjamin (6,7세) / Alevin (초등부 전체)
- 정 원 : 최대 12명
- 구 성 : 1회 영어축구 (INGLES FUTBOL) : 원어민 디렉터 + 담당코치
- 수 강 료 : 주 1회 14만원 *셔틀버스 이용료 포함

PROGRAMS (프로그램)

● ADULTO LECCION (성인축구 교실)

청소년 및 성인 프로그램은 성별과 운동능력, 경험과 니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GOALIET [(초급 / 80분) 골리엣, GOALIET 골 넣는 골리엣]

기초근력이 부족하고, 축구를 처음 해보는 여성들을 위한 전용 수업입니다. (주)솔레아스 교육운영팀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에 근거한 여성 전용 세션을 수업에 적용하여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과학적/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합니다.

- 대 상 : 여성 (학생/성인 가능)
- 수 강 료 : 주 1회 100,000원 / 주 2회 160,000원 / 주 3회 200,000원



DIRECTOR's OPINION

여성축구가 활성화 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MEN(남성)과 WOMEN(여성)의 트레이닝은 확실하게 구별되어 운영됩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고 신체구조가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우 입문 단계에서 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INTERMEDIO [(중급 / 90분) 남성 초급자 + 여성 중상급자 혼성 수업]

"남성 초급자 + 여성 중상급자 혼성 수업" 입니다. 지점별로 보유한 실내구장에서 주로 훈련이 진행되며, 분기별로 인근 지점과 프렌들리 매치를 진행합니다.

- 수 강 료 : 주 1회 100,000원 / 주 2회 160,000원 / 주 3회 200,000원

SUPERIOR [(상급 / 90분) 남성 중상급자 + 여성선수출신 혼성 수업]

"남성 중상급자 + 여성선수출신" 이 함께 하는 동호회형 레슨이며, 30분의 훈련과 60분의 경기로 구성됩니다.

- 수 강 료 : 주 1회 100,000원 / 주 2회 160,000원 / 주 3회 200,000원 + 대회 참가비 별도

● LECCION (맞춤형 레슨)

솔레아스풋볼은 개인의 니즈에 따라 별도의 맞춤형 레슨이 가능합니다. 인원 및 시간에 따라 수강료는 상이합니다. 소위 '반 축구'라고 불리는 형태 역시 본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별첨.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